

행 정 명 령 서

(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등)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자 :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
(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14 제일쇼핑 4층)

나. 처분이유 : 현재 신천지 교회 교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목록 시설(신천지 교회)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필요

다. 처분내용

처분명	대상	기간	비고
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	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별지목록 시설	2020. 3. 23. ~ 국가전염병재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	감염병 예방관리법 제47조
집회금지	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및 그 소속 지파 주관의 종교집회	2020. 3. 23. ~ 국가전염병재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	감염병 예방관리법 제49조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3월

전라남도지사

